[별지 제19호서식] (앞 쪽)

협약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멸종위기종 증명신청서				처리기간 7 일
신청인	①상호(명 칭)			
	②성명(대표자)		③주민등록번호	
	④주 소 (사업장소재지)	(전화 :)		
당해 동·식물내역	⑤보통명		⑥학 명	
	⑦원산지(표본)		⑧생산지(제품)	
	⑨협약적용시점		⑩해당부속서	□Ⅰ □Ⅱ □Ⅲ
	⑪입 수 시 기			
	⑫획득한 지역			
	⑬용 도			
	⑭입 수 경 위			
	⑮명 세			

「야생동·식물보호법」 제16조제1항,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증명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유역환경청장(지방환경청장) 귀하

구비서류	수수료
1. 당해 종이 야생으로부터 포획·채취된 시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살아있는 동·식물의 경우에 한합니다) 1부 2. 당해 종을 취득한 시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(부분품 또는 가공품으로서 야생으로부터 포획·채취된 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합니다) 1부	없 음

210mm×297mm(일반용지 60g/㎡, 재활용품)

(뒤 쪽)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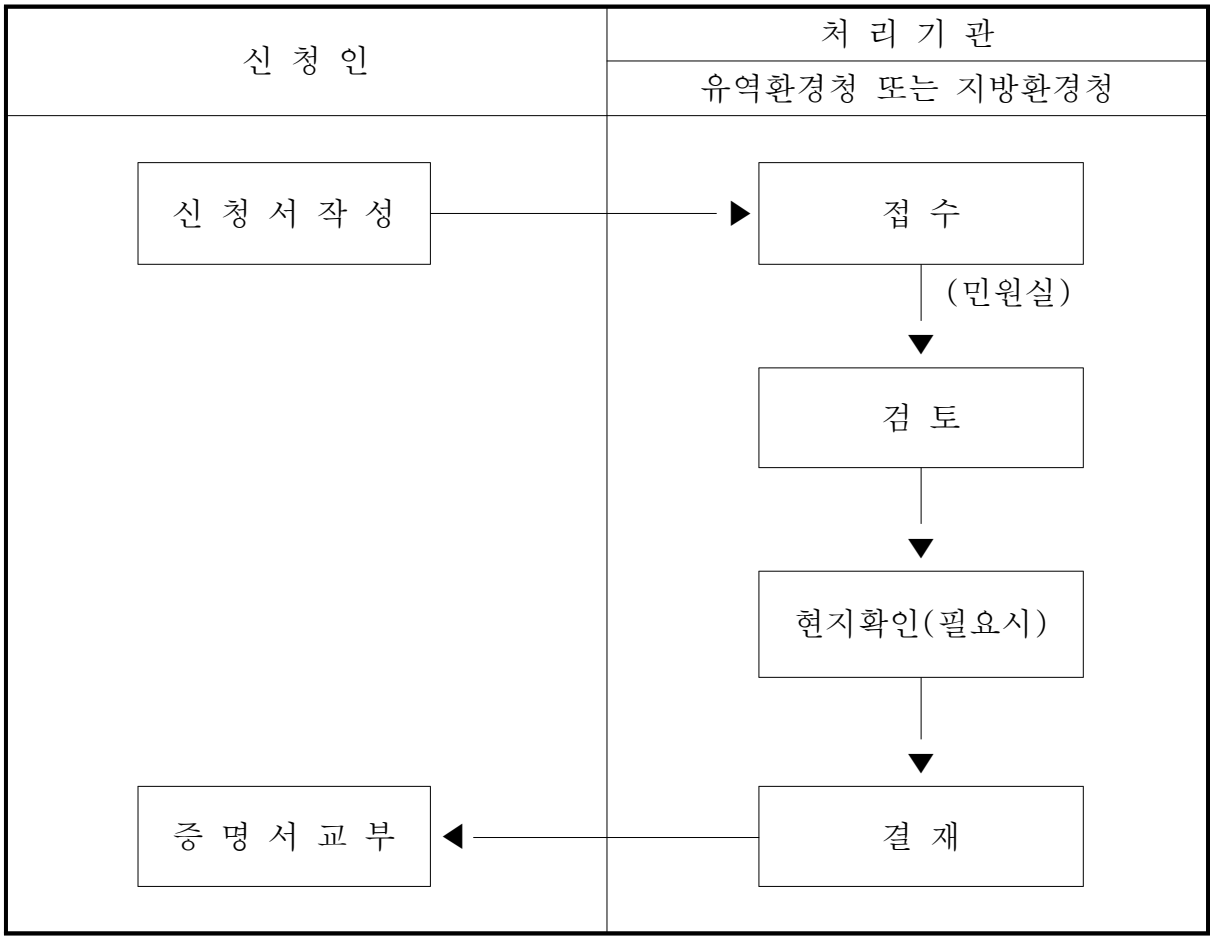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